[별지 제6호의2서식] <개정 2002.11.21.> (앞 쪽)

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					처리기간
					1일
신고인	①성 명 (대 표 자)		②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		
	③주 소/거 소				
본사	④명 칭		⑤전화번호		
	⑥소 재 지				
분사무소	⑦소 재 지				
	⑧전화번호				
	책 임 자	⑨성명		⑩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	
		⑪주소/거소			
⑫공인중개사		명 ※명단은 뒤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

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1. 분사무소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2. 법인의 등기부등본. 다만,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3. 분사무소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이수증 사본 4.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※ 신고안내

신고하는 곳	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 할 시·군·구	담당부서 (전화번호)	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( )
		수수료	시·군·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

210mm×297mm

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

(뒤쪽)

공 인 중 개 사 명 단			
성 명	주민등록번호/ 외국인등록번호	주소/거소	자격증번호 (공인중개사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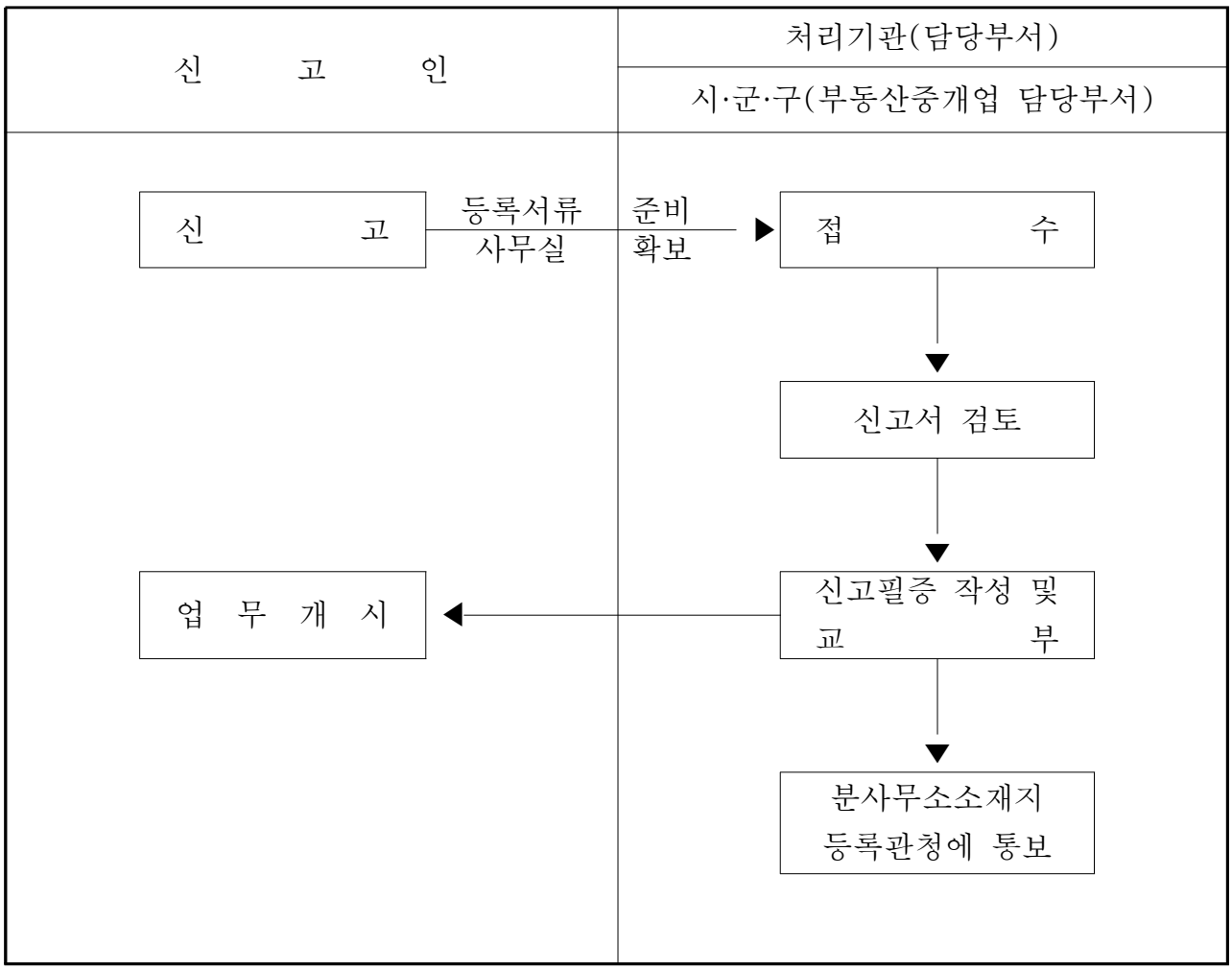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